

의안번호	2220157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8.5.
추계번호	26C383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75조의2 (보험료의 지원)	○ 국가는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) 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 2. 재산 및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○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75조의2 (보험료의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보험료의 지원(안 제7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규모와 1인당 보험료 지원 단가가 전제되어야 하나,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소득·재산 기준(안 제75조의2제1항제2호)과 지원수준·방법·절차(안 제75조의2제2항)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(지원 대상)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, 직장가입자 피부양자, 지역가입자 등의 서로 다른 자격으로 분포하며, 현재 건강보험 DB에서는 이들의 가입유형과 보험료 수준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
 - － (지원 단가)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자격 유형별로 지원 단가를 일률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. 참고로, 현재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¹⁾에 근거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고 있으나, 두 보험의 산정·부과체계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원 규모를 단순 준용하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, 고용노동부의 예술인·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액 현황은 아래 [표 1]과 같음

[표 1] 예술인·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액 현황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
예술인	260	2,185	10,945	21,428	22,978
노무제공자	189	319	464	442	419
합계	449	2,504	11,409	21,870	23,397

주: 예술인('20.12월), 노무제공자('21.7월)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로 지원 초기에는 지원규모가 작게 나타남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

1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(고용보험료의 지원)

-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 3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